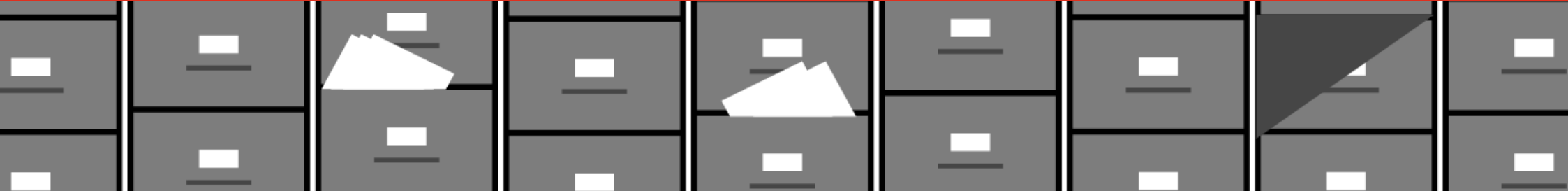


세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관련 신 규정



At a glance...

2020년 11월 19일

10월 19일, 베트남 정부는 세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신규 규정을 다룬 시행령 125/2020/ND-CP (2020년 12월 5일부터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동 시행령은 신 조세관리법의 변경 사항을 감안하여 세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과태료를 다루는 다양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합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세무 당국이 세액, 채무, 과태료 및 이자에 대해 납세자의 계정에서 국가 예산으로의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은행이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금액과 동일한 벌금이 은행에 부과될 것입니다 (기존에 이와 같은 벌금은 세무 당국의 공식적인 강제 집행 결정문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되었습니다). 동 변경 사항은 베트남 개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에 세금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전자상거래 공급업자를 대신해서 은행이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납부할 것을 지칭하는 2019년 신 조세관리규정의 새로운 요구 사항과 관련 지침 시행령과 일관성을 가지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납세자가 관할 당국이 당시 발행한 지침서 및 결정문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행정 과태료 및 지연납부이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 규정은 조세관리법과 일관성을 가집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침서 및 결정문은 동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서류의 권한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동 규정은 긍정적인 개선 사항입니다.
-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추가되었으며, (예. 영업정지의 미공지 또는 지연공지, 또는 재개시일 이전에 사업 재개 등) 및 새로운 시정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예. 세금 납부액 결정에 관련한 정보의 의무 제공, 세금계산서 규정 위반 시 세금계산서의 의무 폐기, 행정 위반으로 벌어들인 불법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무 반환 등).
- 현 규정에 따르면, 세금신고서를 90일보다 늦게 제출하고, 세무 당국이 제출 지연에 관련해 행정 위반 통지서를 발행하기 전에 모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 납부액의 1배에서 3배의 과태료 대신 2백만 동에서 5백만 동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 시행령 125에서는 세금 납부액의 1배에서 3배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관련 행정 과태료 범위를 1천 5백만 동에서 2천 5백만 동으로 인상하고 (세금 납부액에 더해서) 지연납부이자를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 행정 위반이 과세 금액 1억 동 이상 또는 재화/용역의 가치가 5억 동 이상, 또는 세금계산서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와 관련 시, 대규모 위반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 규정 위반 (예. 세금 신고서 제출 지연 또는 늦은 세무 등기 등)에 대한 과태료와 전자 세금계산서 규칙 위반 시 적용되는 특정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 세무 등기 서류, 세금계산서 및 확정 세금계산서의 전자 제출을 지연할 경우에 대한 행정 위반 전자 통지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한 통지서에는 납세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 세부 내용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무 당국 IT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으로 야기된, 전자상 세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상의 지연의 경우 납세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몇가지 경과 규정:

- 동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은 발생 기간에 발효한 규정을 따릅니다.
- 본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했지만 시행일 후에 발견되거나 간주된 위반의 경우, 동 시행령이 납세자에게 더 우호적인 경우 동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 항소 또는 소송 중인 위반 사항 관련, 동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처벌된 위반의 경우 그러한 위반이 발생한 시기에 유효한 규정을 따릅니다.



Contact us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사무실:



Nguyen Huong Giang

Partner
+84 24 3946 2246 Ext. 1502
n.huong.giang@pwc.com



Shim Jin Bo (심진보)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1
shim.jinbo@pwc.com

호치민시 사무실:



Richard Irwin

Partner
+84 (28) 3823 0796
r.j.irwin@pwc.com



Son Han Hee (손한희)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son.hanhee@pwc.com



Pham Hoai An Thy

Director
+84 28 3823 0796 Ext: 3032
pham.hoai.an.thy@pwc.com



Jo Su Jin (조수진)

Associate - Transfer Pricing & KBN
+84 (28) 3823 0796 Ext. 4630
jo.sujin@pwc.com

www.pwc.com/vn



facebook.com/pwcvietnam



youtube.com/pwcvietnam



linkedin.com/company/pwc-vietnam

At PwC Vietnam, our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We're a member of the PwC network of firms in **155 countries** with over **284,000 people** who are committed to delivering quality in assurance, advisory, tax and legal services. Find out more and tell us what matters to you by visiting us at www.pwc.com/vn.

©2020 PwC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